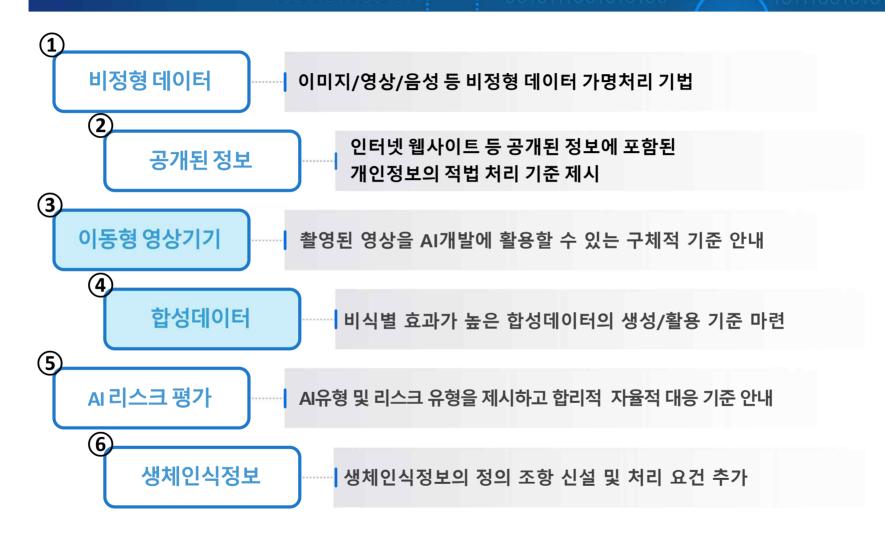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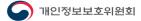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기반의 규율체계』





개요 - 원칙중심의 AI 규율체계







0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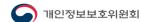
- ▶ 기술발전으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 다양한 이동형 영상기기가 국민 생활 및 산업 전반에 확산 추세
 ⇒ 특히, AI 등의 신기술과 결합하여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 판단, 제어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
- >> 사전 동의가 곤란한 영상정보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시행 '23.9.15) ※ 보호법 제25조의2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 촬영 허용. 단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 요건 준수 필요

법 개정에 따른 준수 권고사항 제시를 통해 산업계 불확실성 해소와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보호법 규정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적 정의

법률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
- ② 휴대형 장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 사람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
- ③ 부착.거치형 장치:차량이나 항공기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거치하여 영상 등을 촬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 촬영 요건(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
 - ▼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가능한 경우(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규정,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이익 등)
 -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단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 불빛, 소리, 안내판, 서면, 방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촬영 사실 표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기본으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80), 이동형 영상기기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성 등을 반영하여 8대 원칙 도출

처리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예상되는 영상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처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1. 비례성 5. 책임성 편익에 비해 권리 침해가 과도한지 등을 종합 고려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함 6. 목적 제한 2. 적법성 개인영상정보처리근거는 적법, 명확해야함 개인영상정보처리는목적에필요한범위에서최소화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권을 7. 통제권 보장 3. 투명성 공개해야 함 행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보장해야 함 개인영상정보가 유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4. 안전성 8. 사생활 보호 처리해야 함 안전하게 관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개괄

기획 • 설계 단계

- 법적 근거 확인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명확화
-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및 합리적 범위 판단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촬영(수집) 단계

- 사생활 보호
- 촬영사실의 표시
- 가능한 익명•가명 처리
- 촬영 거부시 조치사항

이용 • 제공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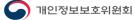
- 목적 범위 내 이용•제공
- 추가적 이용・제공
-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
- 처리 위탁

보관・파기 단계

-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 체계 마련
- 운영관리방침 공개
- 보유기간 설정 및 관리
- 파기 방법

상시 보호조치

- 안전성 확보 조치
-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 주기적 점검
- 정보주체 권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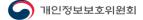


1. 기획 및 설계 단계

- ❖ 제품 · 서비스를 기획 · 설계시에는 관련 법적근거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의 범위를 확인
- ❖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를 통해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수정 · 보완

법적 근거 확인

- ◆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법 제25조의2 제1항)
 - ✓ (제1호)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 또한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일반 요건*은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 이용에 있어서도 유효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의 법령상 업무 수행, 계약 체결 및 이행,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이익 등
 - ✓ (제2호) 촬영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거부의사 없는 경우. 단 부당한 권리침해 및 합리적 범위 초과 금지 : 영상기기운영자가 정보주체의 사전적 · 사후적 권리*를 보장하고, 부당한 권리침해가 없도록 할 경우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에서 촬영 가능
 - * (사전적 권리) 촬영사실 알림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사후적 권리) 열람, 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시 존중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 판단기준

- ◆ 영상 촬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내용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없어야 함
 - ✓ 현재의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영상이 촬영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부당한 수준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부당한 권리침해 목적 정당성

개인영상정보처리목적이 사회통념상정당한목적에 해당하는지판단,

공익적목적은 원칙정당하며,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도 적절한 법령 준수 노력 하에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음

수단 적합성

개인영상정보처리 수단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거나용인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일반적으로판매되는영상기기를통해피촬영자가인지할수있는방법으로촬영하는경우적현목카등은부적한

정보주체 권리의 성질과 내용 정보주체가침해받는권리의성질과내용이통상적으로수용가능한경미한정도인지판단

지율주행차등이법적 요건을준수하여영상촬영후보행자회피,사고예방등에이용한경우 경미한정도로볼수있음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준 보충적수단적용이나적절한인전조치등을통해 정보주체의권리침해기능성을최소화하고 있는지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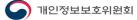
권리침해최소회를위한 보충적수단과적절한인전조치적용여부,정보주체권리행사방법 등에 대한공개여부등고려

2. 촬영(수집) 단계

- ❖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생활 침해 발생 주의, 촬영사실 표시 · 처리방침 공개 등을 통해 신뢰 확보
- ❖ 익명·가명 처리된 영상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익명·가명영상으로 처리

사생활 보호

-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5조의2 제2항)
 - ✓ (예외) 범죄·화재·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영상 촬영 가능
- ◆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휴게실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촬영에 대한 거부감이 예상되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업무 목적 촬영 제한 필요
 - ✓ 위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업무 목적의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피촬영자에게 촬영사실을 알린 후 동의를 받거나, 촬영을 거부 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가능한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



촬영사실의 표시

◆ 이동형 영상기기로 개인영상정보 촬영시(공개된 장소 and 업무 목적)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함

구분	주요 내용 ■ 문자로 표시하는 경우(스티커 또는 데칼 부착) ① 내용은 가로×세로 = 5cm×15cm 내외(승용차 기준)로 차량 크기에 비례하여 적절히 조절(예: 대형버스의 경우 200% 이상) ※ 글자 색상은 배경과 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하되, 붉은색 등 자극적인 색상은 제외(청색 또는 검정색 계열 권장) ② 내용의 경우 스티커 등의 빈공간에 적절히 배치		
	(예시) 자율주행 촬영 중(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표시방법	■ 그림으로 표시하는 경우(스티커 또는 데칼 부착) • 카메라 또는 영상 촬영이 쉽게 연상되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cm 내외로 한 (색상은 위와 동일)		
	(예시) 또는 용제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홈페이지 주소 또는 QR코드		
	■ 추가적 표시방법 병행(권고) • 촬영 사실을 알리는 소형 LED 불빛을 지속하여 발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방향지시등 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은 불가)		

사 례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해외 사례

- 독일 B사 시범운행 자율주행차의 촬영 사실 표시 사례
- 차량 외관에 영상 촬영이 연상되는 그림문자와 업체명, QR코드, 촬영 목적 등을 기재한 스티커 부착
- 촬영 목적은 자동차의 주행 보조 및 차량 편의기능 개발로 기재 (Development of driving assistance and vehicle comfort functions)
- QR코드 촬영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웹페이지 연결
- 법적근거: 유럽 GDPR 제6조 제1항 (f)에 다른 정당한 이익으로 명시
- 보호조치: 개인식별 금지, 암호화 전송·저장, 별도 IT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 권리보장: 보행자가 녹화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의제기 및 삭제요청 가능하며, 유럽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삭제권, 처리정지권, 이동 요구권 등)



- ※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별 특성(목적·용도·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 가능
- ※ 위 내용은 자율주행차 사례에 한함. 드론의 경우는 홈페이지 공지(privacy.go.kr), 바디캠의 경우는 운영자 복장이나 구두 고지 등 권고

3. 이용 및 제공 단계

- ❖ 당초 촬영(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원칙, 추가 이용 · 제공시에는 당초 목적과의 관련성 등 고려
- ❖ 제품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을 연구목적으로 활용시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추가적 이용 ·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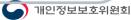
-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제공 (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
 -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추가적 이용 · 제공 가능

자율주행차 등이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파악 또는 보험처리를 위한 추가 이용 · 제공

추가적 이용 · 제공 불가능

· 시범운행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보행자 영상을 저장한 후 개인 식별 가능한 상태로 AI 학습 활용(예측가능성 낮음) 규제샌드박스 신청 가능



0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참고)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24.1~)

>> 보행자 안전기술 연구 등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 단, 영상원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비인가자 접근통제, 국외이전 제한 등 개인정보위에서 부과하는 일정한 안전조치 준수 필요

4개 기업 승인

연내 1~2개 기업 추가 승인 검토 중

NEUBILITY [

kakaomobility 12dot



가명정보 활용 시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인식 오류 발생 가능

AI 알고리즘 학습



자율 주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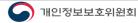
워본 활용 시



자율 주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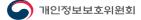
자율주행 상황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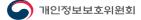
4. 보관 및 파기 단계

- ❖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 보유기간 설정, 보관 불필요한 정보는 지체없이 파기(익명처리 포함)
- ❖ 보호책임자 지정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 외부 위탁시 수탁자 교육 등 관리 · 감독에 주의
 - ◆ 보호책임자 지정 등 운영관리체계 마련
 - ✓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행(보호책임자 지정 등 포함)
 - ◆ 보유기간 설정 및 관리
 - ✓ 보유기간, 보호책임자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 공개, 보유기간 연장시에는 그 사실과 판단 근거 등을 운영관리방침에 기재
 -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
 - ✓ 법 제25조의2제4항 등을 참조하여 운영관리방침 마련하여 홈페이지 공개(보안 유지 등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권고)
 - ✓ 자율주행차 또는 배달로봇 등에는 운영관리방침에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OR코드를 스티커, 데칼 등으로 표시
 - ◆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 파기 또는 분리보관
 - ✓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



5. 상시 보호조치

- ❖ 개인영상정보가 유출 ·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및 점검
- ❖ 내부 직원 또는 수탁 직원에 의한 오남용 예방을 위해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 등 인식제고 노력 필요
 -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 (기술적 조치) 접근통제, 전송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위변조 방지, 악성 프로그램 방지, 출력 · 복사시 안전조치 등
 -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접근 권한의 관리 등
 - ✓ (물리적 조치)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보조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등
 - ◆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 ✓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취급자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등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이행 상황 관리감독
 - ✓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절차 준수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처리 금지.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된 문서(계약서, 협약서 등)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03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합성데이터 소개

>> 합성데이터 정의

합성데이터란,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

>> 합성데이터 특징

합성데이터는 원본의 특성을 모방한 가상의 데이터 원본데이터(개인정보)를 모방하여 가상의 데이터(합성데이터)를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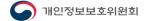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효용성이 높은 데이터 활용 가능

합성데이터는 가상의 데이터

⇒ 잘 생성된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의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 개인정보 이슈 해결

합성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 데이터 증강, 데이터 다양성 증가,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접근성 확보 등



쟁점 및 유의사항

주요 쟁점사항 정리

익명성 판단 기준

- ✓ 개인정보보호법 상 익명정보 관련 내용 부족
- ✓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보다 안내된 생성절차·단계별 검토서식 등을 거쳐 안전하게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하도록 권고

비정형 (이미지) 평가 방법

- ✓ 세계적으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5종 모델 선례를 기반으로 제시 가능한 수준에서 안내
 - * 육안 전수검사 관련,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권고하지는 않는 톤으로 서술

임계값 산정 기준

- ✓ 검증지표가 다양하므로 본문에서 명확한 값을 안내하기에는 한계
- ✓ 부록에서 구별·추론위험도 지표(예시)를 설명 및 권고 임계값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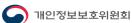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가명정보 특례 등 관련 내용을 안내서 해당 절차마다 설명·명시

>> 안내서 유의 사항

참고용 절차, 방법론의 제시

⇒ 안내서에서 소개한 합성데이터 생성 절차 및 생성방법, 안전성/유용성 검증지표 등은 하나의 예시를 제시한 것이며, 절차를 의무화하거나 표준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시 고려사항 안내

주요 권장사항

① 안전기준 설정

✓ 유용성과 안전성 간 상충관계, 활용목적 등에 따른 안전기준을 먼저 설정

② 원본데이터 전처리

✓ 불필요한 영역 삭제 및 데이터 정제 등 수행

③ 안전성 검증

✓ 합성데이터에 원본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정보 존재 가능성 대비, 정량·정성적 차원의 안전성 검증 절차 수행

④ 안전한 관리

✓ 재식별 등 잔여위험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리계획 마련, 이행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성

니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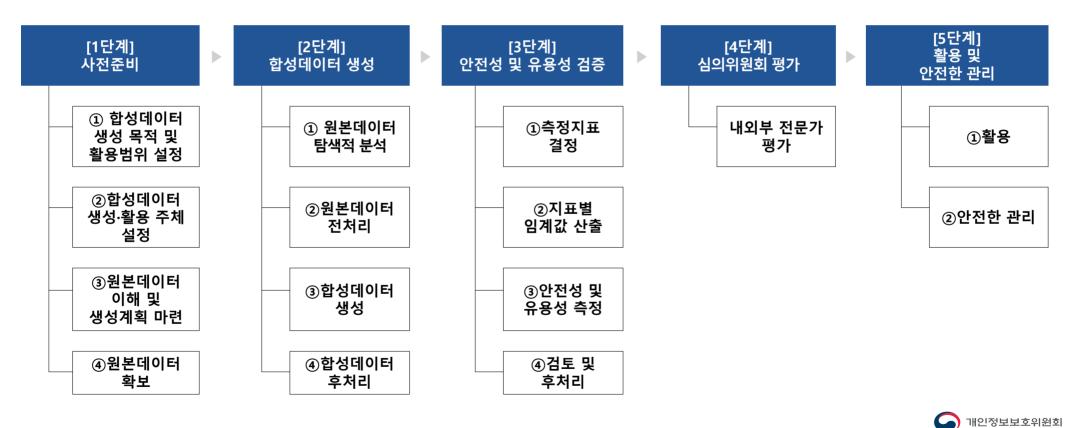
- 익명정보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적용이 배제됨(법 제58조의2)
- 합성데이터 전체가 익명정보인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요건 확인 필요(법 제15조, 18조 등)

2 원본데이터 제공

- 제3의 외부 기관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안내
 - a 위·수탁계약
 - ⓑ 제3자 제공 동의 후 제공
 - ⓒ 가명처리 후 반출 (별도 동의 X)

합성데이터 생성 절차 안내(5단계)

> 합성데이터 생성 세부 절차 흐름도



1. 생성 목적 및 활용 범위 설정 방법 안내

사전준비 단계에서 사용자는 합성데이터가 생성·활용되는 목적과 활용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함

>> 합성데이터 생성 목적 예시

활용 목적 예시 • AI 모델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셋 (합성데이터) 생성 • 데이터 분석 및 협업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범위 예시

활용 환경	설명			
ⓐ 완전 개방 (open)	외부에서 별다른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⑤ 부분 개방(semi-open)	폐쇄 환경은 아니지만, 취급자 또는 제공자 통제가 가능한 환경			
© 폐쇄적 환경에서의 활용 (closed)	외부 연결이 없거나, 있더라도 데이터 취급 시 통제가 강제되는 환경			
활용 형태	설명			
① 외부 공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여 별다른 통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형태			
② 불특정 제3자 제공	현재는 불특정이나 향후에는 제공받는 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③ 제3자 제공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특정 제3자에게 제공			
④ 타 부서 이용(제공)	처리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다른 부서에 제공하는 경우			
⑤ 내부 이용	처리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내부에서 직접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합성데이터 생성 방법

정형/비정형 합성데이터별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과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

♪ 합성데이터 생성 세부절차 흐름도

합성데이터 생성의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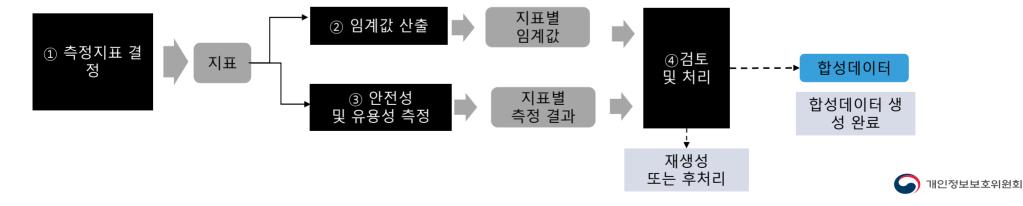
▶ 합성데이터 생성 체크리스트 예시

단계	검토 항목	
	• 원본데이터는 식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1	• 원본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조합하여 식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정보(준식별자 등)를 포함하고 있는가?	
원본데이터 탐색적 분석	• 원본데이터는 민감한 정보, 공개시 사회적 파장이 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원본데이터에 식별성이 큰 극단값이나 특이정보가 존재하는가?	
	• 합성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보존 및 재현이 필요한 컬럼과 속성을 사전에 파악하였는가?	
	• 생성된 합성데이터에 원본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④ 합성데이터	제약이 온전히 반영되었는가?	
후처리	• 일정 수준의 합성데이터 구축 수량이 필요한 경우, 생성된	
	합성데이터는 그 수량을 만족하는가?	Σ위

3. 합성데이터의 안전성/유용성 검증방법

생성된 합성데이터에 원본데이터의 개인정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량·정성적 차원의 안전성 검증 절차를 안내, 유용성 검증에 대해서도 소개

- 1. 측정지표 결정: 안전성 또는 유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 선정 방법 안내
- 2. 지표별 임계값 산출: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기준값(임계값) 수준 산출 기준 제시
- 3. 안전성 및 유용성 측정 : 검증지표, 임계값 산정 등을 바탕으로 합성데이터로부터 원본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검토(안전성)
- 4. 검토 및 후처리 : 임계값, 측정결과, 제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성데이터의 생성 결과를 검토, 필요 시 일부 레코드 삭제 등 후처리



4. 합성데이터 심의위원회 평가

합성데이터의 대외공개 등을 위해 보다 객관적·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내·외부 전문가 심의를 진행

>> 심의 단계별 검토

검토 항목	내용	검토 자료 예시
① 활용 목적, 활용 범위 설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활용 목적 및 범위의 구체적 설정여부 확인 원본데이터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였는지 확인 	합성데이터 활용 계획서, 합성데이터 생성(처리) 위수탁 계약서
② 식별 위험성	• 원본데이터의 식별 위험성 판단 항목 검토 여부 확인	원본데이터 명세서, 항목별 개인정보 처리계획
③ 합성데이터 생성	 원본데이터 특성 검토 결과, 합성데이터 생성계획을 반영하여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였는지 검토 합성데이터 생성 모형이 적합한지 검토 	합성데이터 생성 기초자료 명세서
④ 안전성 검증	안전성 검증 수행 여부와 방법, 과정 검토합성데이터 후처리 등을 올바르게 수행하였는지 검토	합성데이터 명세서, 합성데이터 안전성 자체 검토 결과서
⑤ 활용환경의 보호조치	 합성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활용환경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합성데이터의 재식별 위험 등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검토 	자체 관리계획서



감사합니다

